동국대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수 신 학교운영위원

(경유)

제 목 2025년도 제13기 제76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소집

- 1. 관련: 동국사대금산고등학교-755(2025.02.11.)
- 2. 동국대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제76회 학교운영위원회를 아래 와 같이 개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제76회 동국대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소집공고문 1부.
 - 2. 제76회 동국대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료 1부.

동국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



수신자

담당자 황병호

간사

이상랑

위원장

빈현진

협조자

시 행 운영위 - 7 (2025. 2. 12.)

접수

우 576-962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7번지

전화 (063)543-0721 전송 (063)544-0721 /

/공개

제76회 학교운영위원회 집회 공고

동국대사대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76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5. 2. 20.(목) 오후 14:00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 2025학년도 학교급식 운영 계획외 10건

4. 참고사항 :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역인사 방청 가능

2025년 2월 12일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



2025년도(76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금 산 고 등 학 교

목 차

| 1. 2025학년도 학교급식 운영 계획 | 01~11 |
|----------------------------------|-------|
| 2.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 12~13 |
| 3.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계획(안) | 14~19 |
| 4.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안) | 20 |
| 5. 2025학년도 산사체험학습 실시 계획(안) | 21 |
| 6. 2025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안) | 22 |
| 7. 2025학년도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안) | 23 |
| 8. 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계획 | 24 |
| 9. 2025학년도 씨름부 운영 계획(안) | 25 |
| 10.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안) | 26 |
| 11. 2025학년도 발전기금회계 조성 및 운용 계획(안) | 27~28 |

13기-25년-76회-104호

2025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제안년월일: 2025. 02. 20.

제 안 자 : 교 장

소 관: 행정실장

□ 제안사유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투자로 학교급식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

□ 관련규정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2025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 학교급식 관련 심의 사항

-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일수, 급식기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3.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4.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 5. 교직원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 6. 2025학년도 급식비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
-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8. 식생활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9. 2024학년도 학교급식운영결과 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일수, 급식기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에 관한 사항

가. 급식대상 및 계획

| 급식대상 | 예상인원 | 주간급식일 | 급식일수 | 운영방식 | 배식방법 |
|----------|-------------------|-------|---------|------|------|
| 학생 및 교직원 | 학생 53명 교직원 10명 | 5일 | 186일 예상 | 직영급식 | 식당배식 |

나. 급식일수 및 급식시간

- 1) 급식은 특정 질병 등을 이유로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생을 제외한 전교생과, 희망 하는 교직원에 한해서 실시함
- 2)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실시하며 주 5일(연186일)을 기준으로 하나, 학교운영 교육 과정과 기타 불의(단수, 자연재해 등)의 사항이 발생 시 급식일수를 변경 가능함
- 3) 학교 일정의 변동사항이 없는 한 12시 30분부터 급식 실시
- 4) 수익자부담 급식비 반납은 급식일수가 연속 5일 이상인 경우 해당일수에 대하여 반납결의 조치 (단, 식품구매를 위한 품의 전에 사전 통보가 된 경우는 5일 미만이라도 반납)

다. 구체적 영양기준

-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집단의 성장 및 건강 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관련)

<개정 2021. 1. 29>

| | | | 에너지 | 단백질 | ЫE | l민A | 티 | 아민 | 리보플 | 플라빈 | 비티 | ·민C | 칼 | ·슘 | į | 펄 |
|---|----------|----|--------|------|-----|-----|------|------|------|------|------|------|--------|-----|-----|-----|
| 구 | ¹분 | 성별 | | · · | (R | E) | (m | ıg) | (m | ng) | (m | ig) | (m | ng) | (m | ng) |
| | | | (kcal) | (g)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평 평 | 권장 | 평균 | 권장 |
| | _ | 남성 | 840 | 20 | 177 | 250 | 0.30 | 0.37 | 0.40 | 0.50 | 23.4 | 30.0 | 267 | 334 | 3.7 | 4.7 |
| 7 | ਨ | 여성 | 670 | 18.4 | 160 | 217 | 0.30 | 0.37 | 0.34 | 0.40 | 23.4 | 30.0 | 250 | 300 | 4.0 | 5.4 |
| | _ | 남성 | 900 | 21.7 | 207 | 284 | 0.37 | 0.44 | 0.47 | 0.57 | 26.7 | 33.4 | 250 | 300 | 3.7 | 4.7 |
| - | ם | 여성 | 670 | 18.4 | 150 | 217 | 0.30 | 0.37 | 0.34 | 0.40 | 26.7 | 33.4 | 234 | 267 | 3.7 | 4.7 |
| | 직원 및 | 남성 | 840 | 21.7 | 187 | 267 | 0.34 | 0.40 | 0.44 | 0.50 | 25.0 | 33.4 | 217 | 267 | 2.7 | 3.4 |
| | ¥ I타 | 여성 | 640 | 16.7 | 150 | 217 | 0.3 | 0.37 | 0.34 | 0.4 | 25.0 | 33.4 | 184 | 234 | 3.7 | 4.7 |

※ 비고: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본교기준량>

| 구분 | 에너지 | 단백질 | | IUA E) | | 아민 ng) | 리보플 (m | 플라빈 ng) | | ·민C ig) | 칼 (m | 슘 ig) | <u>‡</u> (m | ig) 됨 |
|-----------------|--------|------|-----|-----------|------|-----------|-----------|------------|------|------------|---------|----------|----------------|----------|
| 74 | (kcal) | (g)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 본교 영양 기준량 | 905 | 22.7 | 180 | 252 | 0.32 | 0.39 | 0.41 | 0.49 | 24.7 | 31.6 | 249 | 305 | 3.7 | 4.7 |

※ 비고 : 이 표의 영양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임 (중식기준).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가.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1) 제안사유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에 의거 식 재료 선정과 관련한 원산지 및 품질 기준을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내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이 어려운 품목에 한하여 수입산을 구입 하고자 함. 수입농산물 구입 승인을 받았더라도 국내산 수급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국내산을 구입하고자 하며, 식재료 선정 시 위생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한다. 또한 식재료 품질 기준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준한 품질기준 사항에 따라 식재료를 구입하고자 한다.(본교의 기준은 이를 상위하여 제공함)

| _ | 그 분 | 식재료 규격 관리 기준 | | | | | | | |
|--------------|------------|---|--------------------------------|------|---------|--------|------------------|--|--|
| | | ■ 원산 | 원산지 표시(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거래명세서 표시 | | | | | | |
| 일반사항 | 지리 | ■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또는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등급 이상 ■ 국내산 : "국산 "또는 "시·도명" 이나 "시·군·구명" | | | | | | | |
| | | 표준 | 표 시 사 항 | | | | | | |
| 농산물 | | 규격품 | 등급 | | 품 종 | | | | |
| | | | 산지 | | 무 게(개수) | 6g(개) | 」■ 수입산 : "수입국가명" | | |
| | 쌀 | ■ 수확 | 연도가 1년 | 이내 | | | | | |
| | 전처리 농산물 |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증급, 생산연도) | | | | | | | |
| | 수입 농산물 | ■ 대외 | 무역법, 식품 | 뜱위생법 | 등 관련법 | d령에 적합 | 합 | | |

| | 공통사항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또는 작업장(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
|------|------------|---|
| | 쇠고기 |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국내산 한우 |
| 축산물 | 돼지고기 |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국내산 |
| | 닭고기 |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국내산 |
| | 계란 | ■ 유통기한 표시 및 1등급란 |
| | 이버니하 | ■ 원산지 표시 |
| | 일반사항 | ■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상"이상 |
| 수산물 | 전처리 수산물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가공처리(세척, 선별, 절단 등) 한 것. |
| | |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
| | 수입 수산물 |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
| | | ■ 전통식품, 산업표준 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 표시품 |
| |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 가공식품 | 푹 및 기타 |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 | | •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 예외 :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완제품 사용 승인사항

1) 제안사유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항 - 조리가 불가능한 음식에 대하여 완제품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식품으로 용기, 포장, 보존방법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적합한 아래와 같은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함.

| 품 목 | 종 류 | 완제품 급식사유 |
|-----|--------------------|---|
| 유제품 | 요구르트, 치즈, 호상요구르트 등 | 성장기 학생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칼슘, 철분 등 무기질을 보충하기 위함 |
| 떡류 | 경단, 송편, 절편, 백설기 등 | 학생들의 선호도도 높고 학교급식을 통해 전통음식을 접 하게 함. |

| 빵류 | 토스트, 모닝빵, 햄버거 빵 등 | 대부분 밥, 국, 반찬으로 제공되는 식단에 변화를 주어 학생들의 기호가 높은 빵을 급식함으로써 학생들의 기호 를 만족시킬 수 있음 |
|------|---|--|
| 과일류 | 사과, 단감,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의 수입 또는 제철과일 | 비타민B, 비타민C, 등 수용성 비타민을 보충하며 후식으로 제공 |
| 양념류 | 간장, 된장, 고추장 등 | 조리실에서 직접 담거나 제조가 불가능함. |
| 통조림류 | 케찹, 머스타드, 참치, 골뱅이통조림 |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하기가 불가능함 |
| 김류 | 구운김-국내산 | 학생들의 기호도가 높은 반면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하여 배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음료류 | 과일주스 등 | 비타민B, 비타민C 등 수용성 비타민을 보충하며, 후식으로 제공 |
| 장아찌류 | 단무지, 오이피클 등 |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가 불가능함 |
| 김치류 | 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갓김치, 열무김치 등 | 단체급식에서 대량조리 및 숙성시설 및 기구 부족으로 직접 조리에 어려움이 많음 |
| 완제품류 | 어육가공품 |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가 불가능함 |

다. 수입산 식자재 사용 승인사항

- 1) 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 2) 승인요청사유
 - 학교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국산 식자재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학교급식담당자가 수입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의 사용범

위에 한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식 자재를 사용하고자 함

3) 승인적용기간 : 2025년 3월 ~ 2026년 2월까지

4) 수입산 식자재 사용 승인요청품목

| 구분 | 품목 |
|-----|-----------------|
| 농산물 | 일부 과일 및 채소류 |
| 수산물 | 일부 수산물 |
| 공산품 | 일부 반제품, 완제품, 기타 |

3.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가. 식재료 공고 및 계약방법: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NeaT) 이용

나. 계약방식

- 1) 전자입찰(소액수의 포함) : 지정정보처리장치(NeaT시스템)를 통한 입찰서(견적서) 제출
 - 가) 대상금액 : 추정가격과 관계없이 전체
 -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방법

| 추정 가격 기준 | 계약상대자 결정 | 공고방법 | 구분 |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제출자 중 최저가역 제출자 | NeaT 시스템 이용 | 소액수의 (2인 이상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 NeaT 시스템 이용 | (2인 이정 견적제출) |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적격심사 | NeaT 시스템 이용 | 전자입찰 |

- 다) 대상 식품군류
 - <u>식품군류 전체</u>(농산물류, 공산품류, 수산물류, 육류, 가금류, 김치류, 기타류)
- 라) 추정가격 작성 : 시장조사, 거래실례가격 등을 통하여 작성된 품의금액 또는 예산상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 2) 전자수의견적 : 지정정보처리장치(NeaT시스템)를 통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 가) 대상 :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제출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 다) 대상 식품군류 : 기타류(친환경농산물 등)

4.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가. 급식예정인원 : 약 63 명 (본교 재학생 + 교직원)

나. 급식비

| | 2024년 | 2025년 |
|-----|--------|--------|
| 급식비 | 4,900원 | 5,620원 |

| 단가구성 구분 | 식품비 | 운영비 | Я | 전년 대비 비교증감 | |
|------------|----------------|--------------|--------|------------|--|
| 학생 | 4,980원 (88.6%) | 640원 (11.4%) | 5,620원 | ▲ 720원 | |
| 교직원 | 5,450원 (89.3%) | 650원 (10.7%) | 6,100원 | ▲ 700원 | |

3) 친환경 지원금 운영방식 및 지원 단가

단위 (원)

| | 친환경 지원금 | 전년 대비 비교증감 |
|--------|---------|------------|
| 동대부금산고 | 470원 | _ |

5. 교직원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제안이유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급식비에 기타지원금(친환경농산물 등)을 포함하여 징수해야 하며 통합학교 및 공동조리학교는 학생급식비가 높은 학교의 학생급식비 이상으로 징수해야 함

나. 2025학년도 금산고등학교 급식비 구성내역

| 구 분 | 식품비 | 운영비 | 친환경 | 계 |
|---------|---------------|-------------|------|--------|
| 2024학년도 | 4,370원(89.2%) | 530원(10.8%) | 470원 | 5,370원 |
| 2025학년도 | 4,980원(88.6%) | 640원(11.4%) | 470원 | 6,090원 |

※ 급식단가: 2025년 학교무상급식 지원 단가 적용

나. 교직원 급식비 책정(안)

- 교직원 급식비 = 6,100원
- 교직원은 학생과 동질의 급식을 제공

| 구분 | 식품비 | 운영비 | 계 |
|--------|---------------|-------------|--------|
| 교직원급식비 | 5,450원(89.3%) | 650원(10.7%) | 6,100원 |

6. 2025학년도 급식비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

가. 제안이유

학교급식 특성상 급식실에서 검식 및 조리작업에 직접 참여함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시행령 제2조 2항 8호에 의거 급식담당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4명과 보존식 1인분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제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 1.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 검식 준수사항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 2항)
 - * 검식 시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 이취, 조리 상 태 등을 기록 (나이스 급식일지에 작성 및 일지 작성)
 -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목적

학부모 참여 확대로 양질의 급식 제공과 작업공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식이용자의 만족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학교급식소위원회

- 1)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각급학교는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 · 학교운영위원과 학교구성원(교직원, 학부모)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
 - 학부모 중 학교급식에 관심 있는 자
 - · 위원회에 영양(교)사 등을 간사로 참여 (2005.12월, 국가청렴위 권고)
- 2)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역할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의역할
 - 급식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등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제고 및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 제공에 기여
- 3)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 매년 식재료 납품업체 현장 방문평가
-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참관)
-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활동으로 위임한 사항

다. 학교급식 모니터링제 운영

- 1) 참여인원 : 학교급식소위원과 학부모 참여 신청(학교급식 모니터링)을 받아 참여
- 2) 활동방법
 - 검수서의 품목, 수량, 규격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납품된 식품의 온도, 유통기한, 제조일자. 포장단위나 형태. 용도에 맞는 크기나 등급인지 확인
 - 식품의 품질(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 관능검사법)을 판정
 - 검수활동 후 설문평가서 작성 (검수활동 시 식생활관 내부 시설 위생 상태 점검)

8. 식생활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생활관 위생관리

- 1)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연 5회 이상 방역, 소독
- 2) 영양사 및 조리실무사 연 2회 건강진단(보건증) 실시
- 3) 음용수 : 정수기
- 4) 보존식 철저히 관리(보존식 전용냉동고 -18℃ 이하, 144시간 이상 보관, 메뉴별 150g)

9. 2024학년도 학교급식운영결과 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가. 개요

급식수요자의 급식에 관한 알 권리 및 원활한 급식운영을 위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2024학년도 급식이행상황을 공개함으로써 2025학년도 급식운영에 참고하고자 함

나. 급식일 : 중식기준 연 186일

다. 영양관리

- 1) 학생들의 영양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영양량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제5조제1항 관련)에 준함
- 2)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가공식품 사용 및 완제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함
- 3) 제철식품 및 절기식품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식단을 구성함

라. 개인위생 및 안전관리

- 1) 매일 작업 전 손톱, 복장, 설사 및 화농성 상처확인 및 기록
- 2) 조리종사원 월 1회 위생교육 실시 및 평가
- 3) 납품업체 연 1회 위생교육 실시

*교육내용: 개인위생 및 식품취급 시 위생, HACCP의 전반적 사항

- 4) 일, 주, 월 단위로 나누어 청소 실시
- 5) 건강검진 : 연 2회 실시

마. 식재료 납품 및 검수

- 1)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식재료 납품
- 2) 오전 8:00~9:00까지 업체별로 시간차를 두어 납품이 이루어져 원활한 검수실시(복수대면 검수)
- 3) 검수 완료된 식품은 각각 온도관리 들어감(냉동, 냉장식품 각각 적정온도에 보관)

바. 작업위생관리

- CCP,CP에 의해 매 작업마다 관리를 하여 식중독 원인균의 접근을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 (CCP, CP는 현장기록이 이루어짐)

사. 식생활 지도

- 1) 월별로 영양소식 및 식단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 및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 2) 홈페이지에 매주 제공되는 식단의 원산지 및 영양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게시함으로 써 급식에 대한 신뢰를 높임

아. 급식 운영관리

- 1) 월 1회 시장조사 실시, 이를 다음 한달 간 적용하여 식단을 작성함
- 2) 연 2회(1월, 8월) 급식비 중 사용비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3) 연 1회 만족도조사 실시, 결과 분석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및 급식에 반영

10.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이유

- 우리나라 식생활 특성상 비타민B와 칼슘이 가장 부족하기 쉬운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및 골격 성장에 필요한 칼슘 섭취가 특히 더 부족한 실정임. 영양섭취기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기 칼슘 섭취 수준은 권장섭취수준의 50%미만에 그치고 있어, 학교에서의 우유 급식을 실시로 청소년기 신체 발달 및 균형적인 영양소 섭취에 기여하고자 함

나.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①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다. 우유급식 희망 및 납품업체 선호도 조사 실시 예정

○ 우유급식 희망조사 및 선호도조사일 : 2025년 3월

○ 조사대상 : 본교 재학생

○ 조사방법 : 가정통신문을 통해 우유급식 희망 여부 및 선호도 조사

라. 우유공급 예정단가 및 용량

○ 용량 및 예정단가 : 200ml / 530원

마. 우유급식비 징수

○ 우유급식비 부담 주체는 전액 수익자 부담 원칙(급식비와 별도)

○ 징수 결정 : 2회/연 (학기마다)

○ 수납 : 스쿨뱅킹 이용

바. 우유급식 진행 방법

○ 우유 급식기간 : 2025년 4월 ~ 2026년 2월

○ 우유급식일수 : 학기별 약 80일, 방학기간 포함 연간 총 230일 내외

○ 1교시 시작 전에 각 반 담당 학생이 배식을 받아 교실에서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동시 실 시(우유의 품질보존과 음용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 당일 담임교사 지도하에 음용하 도록 하며 가능한 잔유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함)

○ 품목

-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②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기한 제품은 제외
- ③ 국산 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우유 보존식 : 영하 18℃에서 144시간 검체용으로 보존함

사. 우유급식 예정내역

| 구 분 | 급식기간 | 단가 | 인원 | 일수 | 금액 |
|---------|-----------------------|------|----|------|------------|
| 학생우유급식비 | 2025년 4월~ 2026년 2월 | 530원 | 20 | 160일 | 1,696,000원 |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제안년월일 : 2025. 02. 20

亚

소 관: 연구부장

제 안 자 : 학

1. 제안이유

- 가. 학교특성 및 교육목표에 따라 내실 있는 교수학습활동 및 인성지도가 이루어져 교육성과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을 수립
- 나. 2024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안)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기초 소양교육 강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과 건학이념 구현에 대한 교육혁신 인식도 충족시키고자 한다.
- 다.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한다.

2. 관련 근거

- 가. 2015개정교육과정(2017. 9. 29. 교육부 고시 제217-131호)
- 나. 2022개정교육과정(2022.12.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3. 주요내용
 - 가. 교육목표 및 학교장 경영 방침
 - 나. 특색 교육활동 추진 계획
 - 1)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
 - 2) 교과교실제 운영 계획
 - 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 1) 교육과정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 2)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 운영 계획
 - 3) 주제 중심 교과통합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
 - 4) 교육과정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 라. 부서별 실천 추진 계획
 - 1) 도서관 운영 계획
 - 2) 교내 수상 운영 계획

- 3) 수업 공개 계획
- 4)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5) 학력 신장 지원 계획
- 6) 보건실 운영 계획
- 7) 학교폭력예방 지도 계획
- 8) 인성교육 계획
- 9)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10) 산사체험학습 계획
- 11) 현장체험학습 계획
- 12) 교복선정 및 공동구매 계획
- 13) 안전사고 예방 계획
- 14)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학교 운영 계획
- 15) 졸업앨범 제작 계획
- 16) 불교학생회 운영 계획
- 17) 진로·진학상담 계획
- 18) 육성종목 씨름부 운영 계획
- 19) 학교의 미래지향적 발전

붙임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안) 1부.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계획(안)

제안년월일 : 2025. 02. 20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과 : 인성인권부장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402(2025.01.09.) 2025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위한 구성원 선출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하기 위함.

2. 관련근거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402(2025.01.09.)

3. 주요내용

-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기능
 -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사안 보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나 세부 추진 내용
 -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임기 : 2025. 03. 01 ~ 2027. 2. 28.(2년간)
 - 위원정수(3명): 교무부장 1명, 학교폭력책임교사 1명, 학부모위원 1명
 - 학부모위원 선출 : 1명
 - 선출방법
 - ①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모집 공고 (가정 통신문 발송)
 - ② 학교운영위원회에 후보자를 공지하고 선출(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 ③ 후보로 등록한 학부모 수가 정수 초과 시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정수 충족시 당선 여부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수 미달 시 입후보자를 학교구성원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붙임 2025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2025.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1 추진 목적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속·공정한 대처와 피해(추정) 학생 보호 및 가해(추정) 학생 선도를 위한 운영 지침 필요

2 추진 근거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3 추진 방침

-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은 3명으로 한다.
- □ 학부모 구성원은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 추진 계획

○ 전담기구 구성 방법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3명으로 하되 학부모 구성원은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인 1명으로 구성함
-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보건교사 등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함

○ 학부모 구성원 위촉

- 절차 : △학교(안건 상정) → △학교운영위원회(심의·추천) → △학교장 위촉
- ① 학교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천된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함 (다양한 방법 : 공개 모집, 교직원 직접 추천 등)
- ② 학교운영위원회 : 상정된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함
- ③ 학교장 : 추천된 학부모 중에서 학교장이 최종 위촉함
- ※ 추천된 학부모 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명시하여야 함

○ 전담기구 구성원 임기 : 2년

| 교원 | 학부모 |
|----------------------|-----------------|
|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 기간 활용 | 자녀의 본교 재학 기간 활용 |

- ** 학부모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성원의 사임이나 자녀의 졸업·전학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 구성원의 잔여 임기로 함
-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여비** : l회 3만원으로 함
- □ 구성 인원(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

| 총원 | 교무부장 | 인성인권부장 및 책임교사 | 학부모 |
|----|------|------------------|-----|
| 3명 | 1명 | 1명 | 1명 |

□ 조직

| 전체구성원 3명 | | 교원(명) | 2명 | | |
|----------|-----|--------|----------------------|---------------------|--|
| 선세구성원 3명 | | 학부모(명) | 1명(전체 구성원의 1/3이상 구성) | | |
| 순 | 유형 | 성 명 | 구성원 | 임기 | |
| 1 | 교원 | 김현곤 | 교무부장 | | |
| 2 | 교원 | 송병호 | 인성인권부장 및 책임교사 | 2025.3.1.~ | |
| 3 | 학부모 | 문상돈 | 2학년 학부모 | 2025.3.1.~2027.2.28 | |

□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학교폭력 사안 접수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한다.
-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한다.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 방법 등을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교사 포함) 분리

○ 학교장 피·가해학생 긴급조치(필요시)

-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모든 사안에 지체없이 2호 접촉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 관련학생 안전 조치를 우선 시행하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출 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사안보고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48시간 이내(공휴일 미포함) 관할교육지원청으로 서면 보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 유선으로 즉시 보고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① 수사기관 :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등
- ②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단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배정 기준

- ▶ 학교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전담기구 등을 활용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조사를 할 수 있음
- ① 단, 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조사관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 ② 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조사관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안의 경중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협의 후에 전담조사관 활용하여 사안조사 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조사 시 동석

-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청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이 판단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폭력 사안접수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에 경미한 학교폭력 요건 및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를 심의한다.

○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심의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 ※ 가해학생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고 학급 내 자리 교체 등의 방법으로 분리함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삭제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삭제 여부를 심의**한다.
- ※ 다만, 2023.2.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인 경우에는 제4호, 제5호, 제6

호, 제8호의 삭제 여부를 심의함

다.

용을 제외할 수 있다.

|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 | \bigcirc | 집중보호 | 또는 | 관찰대상 | 학생에 | 대하 | 생활지 | 도 |
|---------------------------|------------|------|----|------|-----|----|-----|---|
|---------------------------|------------|------|----|------|-----|----|-----|---|

-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한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한다.

| 5 사안 처리 시 유의 사항 | |
|--|----|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 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 로 학교폭력 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 -안 |
| 학생과 보호자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 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로 |
|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관계개선 조정 및 학교장 자체해결을 극 활용하되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적 |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가급적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보호 에게 알리고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 자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피해추정 또는 가해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 ·정 |
|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조치 결정시 피해(가해)추정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 [회 |

□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 피해아동 측 의사(동의 필수)를 고려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

6 기대 효과

- □ 적법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운영으로 사안 조사 적정성 제고
-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으로 학교의 안정적 사안 조사 기반 조성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안)

제안년월일 : 2025. 02. 20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 인성인권부장

1. 제안이유

- 가.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자연적, 사회적 현상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므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자주적인 학습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 나.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다. 대학교 탐방을 통해 관련 학과를 알아보고 학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 가. 현장체험학습 진로체험
 - 1) 일시 및 대상 : 2025. 4. 29.(화) 1학년
 - 2) 테마 : 진로 희망 직업 체험
- 나. 현장체험학습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 1) 일시 및 대상 : 2025. 4. 29.(화) 5. 1.(목) 2학년 (2박 3일)
 - 2) 테마: 테마식 지역문화탐방 및 현장체험학습
- 다. 현장체험학습 춘계현장체험
 - 1) 일시 및 대상: 2025. 4. 30.(수) 3학년
 - 2) 테마: 지역문화탐방 및 현장체험학습
- 라. 현장체험학습 진로체험
 - 1) 일시 및 대상: 2025. 5. 1.(목) 3학년
 - 2) 테마: 진로 희망 직업 및 학과 탐방 체험
- 마. 현장체험학습 문화유산탐방
 - 1) 일시 및 대상 : 2025. 9. 16.(화) 전학년 13:30 15:30
 - 2) 테마 : 역사 속 문화재(유적지) 탐방을 통한 교과서 속 역사 체험
- 바. 현장체험학습 추계현장체험
 - 1) 일시 및 대상 : 2025. 10. 31.(목) 전학년
 - 2) 테마: 지역문화탐방 및 현장체험학습

붙임 2025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안) 1부.

2025학년도 산사체험학습 실시 계획(안)

제안년월일 : 2025. 02. 20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 인성인권부장

1. 제안이유

- 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험적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나. 자연을 사랑하고 협동·봉사정신 및 공동체의식 함양과 인내심 강화를 통한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 다. 다양한 표현기회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더불어 생활하는 협동심, 사회성, 발표력 신장을 통한 민주시민의 생활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 라. 공동체의식 함양과 극기심을 길러줌으로써 건강하고 진취적인 전인적 인격체 육성을 할 수 있다.
- 마. 산사체험을 통해 마음의 수양을 쌓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
- 2. 주요내용(교육과정 운영계획서 p.104)
 - 가. 대상: 1학년 학생 전원
 - 나. 기간: 2025. 4. 30.(수) 5. 1.(목) (1박2일)
 - 다. 장소: 김제 금산사
 - 라. 학생 1인당 예상경비: 60,000원

2025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안)

제안년월일 : 2025. 02. 20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 인성인권부장

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조국의 발전상을 몸소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장차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 년들에게 자긍심과 바른 국가관을 심어 줌은 물론 단체 생활을 통하여 단결심과 협동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주요내용(교육과정 운영계획서 p.102)
 - 가. 대상: 2학년 학생 중 희망자
 - 나. 기간: 2025. 4. 29.(화) 5. 1.(목) (2박3일)
 - 다. 장소: 제주도 일원(학부모 및 학생 설문조사 결과)
 - 라. 학생 1인당 예상경비: 550,000원(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금 1인당 350,000원)
 - 마. 수익자부담 인원: 20명(1인당 200,000원)
 - 바. 수익자부담 사유: 교통편(왕복 비행기 및 버스-공항, 제주도) 비용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

붙임 2025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안) 1부.

2025학년도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안)

제안년월일 : 2025. 02. 20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 인성인권부장

1. 제안이유

학교 시설, 학생 교육활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학생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교육과정 운영계획서 p.110)

- 가. 학교안전계획 목표
- 나. 학교 현황 및 지형(대피도 등)
- 다. 학교 안전 조직 및 현황
-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학교안전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
- 라. 전년도 추진 실적
- 마. 학교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 안전교육 교육과정 분야, 교직원 안전교육 분야, 재난대비 훈련 분야,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계획
- 바.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

3. 관련근거

- 가. 「초・중등교육법」제30조8(학생의 안전대책 등)
- 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2조
- 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의2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등)
- 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 마.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제10조(현장체험학습), 제12조(안전교육)

4. 대상

가. 학생 및 교직원

5. 기대효과

- 가. 학교 안전 사고 예방
- 나. 재난 안전 교육 내실화
- 다.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 체계 구축

붙임 2025학년도 학교 안전사고 예방 종합 계획(별첨) 1부.

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계획(안)

제안년월일 : 2025. 02. 20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 인성인권부장

1. 제안이유

- 가. 졸업앨범 제작을 통하여 학교의 전통 계승 및 모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교심 고취
- 나.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되돌아보고 오랫동안 간직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 주요내용(교육과정 운영계획서 p.118)
 - 가. 수량: 총 18부 (졸업예정 인원 18명), 학교수요량 2부 별도
 - 나. 예상단가: 1부당 90,000원
 - 다. 사양내역 : 별지 참조
 - 1) 규격: 신사절(250mm X 315mm)
 - 2) 표지: 가) 외부 2단 레자
 - 나) 내부 마닐라판지 $2300g/m^2$
 - 3) 면지: 백상지 150g/m² 칼라인쇄
 - 4) 내지: 유광아트 $180q/m^2$
 - 5) 앨범 면수: 표지 8면, 면수 40면
 - 6) 내용: 회차, 교기, 교명, 교화, 학교 전경, 이사장님 존영 및 집무, 교장 선생님 존영 및 집무, 선생님 단체, 교직원 개인, 직원 조회, 학급 단체, 학생 그룹, 개인 인물, 프로필, 수학여행, 수련회, 체육대회, 축제, 기타 창의적체험활동, 학급별 낙서장, 편집임원 단체, 편집임원 후기, 학생회임원 단체 등

2025학년도 씨름부 운영 계획(안)

제안년월일 : 2025. 02. 20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 인성인권부장

1. 제안이유

- 가. 올바른 인격형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부모 및 어른 공경, 동료애, 타인과의 협력의식(희생, 봉사, 양보, 헌신)
- 나.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 육성
- 다. 글로벌 인재육성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선수 육성

2. 대상

가. 씨름부

- 3. 주요내용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p.126)
 - 가. 2025년 대회 출전 및 연습 실시 계획(전국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
 - 나. 하·동계훈련 및 전지훈련 운영계획
 - 다. 대회 출전 및 훈련 중 특별식 제공
- 4. 관련 근거
 - 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교육 활성화

5. 기대효과

- 가. 심신단련을 통한 인성교육 함양
- 나. 운동경기를 통하여 인내력과 배려 및 협동심 배양
- 다. 우리 민족 전통씨름을 계승 발전시키고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여 학교 명예와 지역사회의 위상을 높 인다.

붙임 2025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안) 1부.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안)

제안년월일 : 2025. 02. 20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 연구부장

1. 제안이유

농어촌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과 인문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학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비교과목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을 위한 승인을 요함.

2. 근거

2025 전북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3. 주요내용(교육과정 운영계획서 p.80)
 - 가. 예산금액: 15,542,000원(자유수강권+농어촌교육비+기초학력+교과보충프로그램)
 - 나. 운영기간 : 2025년 3월 2025년 12월
 - 다. 교과 :
 - 1)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목 8교시, 금 8교시)
 - 라. 비교과 :
 - 1) 교과탐구(월,화 8교시)
 - 2) 생활체육(월,화 8교시)
 - 3) 밴드(월,화 8교시)
 - 4) 입시체육-씨름 (월,화,목,금 8교시)

4. 기대효과

- 가. 실질적 학력 증진
- 나.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 및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 다.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의 완화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

붙임 2025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안) 1부.

2025학년도 발전기금회계 조성 및 운용 계획(안)

제안년월일 : 2025. 02. 20 제 안 자 : 학 교 장

소 관: 행정실장

1. 제안이유

자발적 기부의사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사용(지출)계획 수립 이후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변경 기부 내역(안)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제안함.

2. 주요내용

자발적 기부의사에 의한 기부금품을 반영하여 사용(지출)계획을 수립함.

3. 조성내역

| 수입계 | 계획 | | 지출계획 | | | nj – |
|-----------------------------------|----------|-----------|-----------------------------------|-----------|-----------|------|
| 사업명 | 조성 내역 | 금 액 | 사업명 | 내 역 | 금 액 | 비고 |
| 2025학년도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 | 기부금 | 2,585,220 | 2025학년도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 | 학생 장학금 | 2,585,220 | |
| 계 | | 2,585,220 | 계 | | 2,585,220 | |

붙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발전기금운용 계획서 1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 : 2025학년도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업

나. 목적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 기부금품

3. 수입 및 지출계획

가. 원안

○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 사업명 | 수입계획 | 수입기간 | 기부(모금대상)자 | 기부(모금)액 |
|------------------------------|-------|---------------------|-----------|---------|
| 2025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업 | 2,586 | 25.03.01 ~ 26.02.28 | 기타 | 2,586 |
| | 2,586 | | | |

○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 사업명 | | | | | | | |
|---------------------------------|-------|---------------------|-----------------------|-----------|-------|--|--|
| 2025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업 | 2,586 | 25.03.01 ~ 26.02.28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 활동의 지원 | 학생 장학금 지급 | 2,586 | | |
| | 2,586 | | | | | | |

※ 「사용용도」란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호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세부사용내역」란에는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에 따른 세부사용내역을 기재

4. 기타